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8. 11. 7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0월 19일 박남오 의원의외 4인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년 10월 22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1998년 11월 6일 제60회(임시회)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남오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(대통령령 제15,875호)에 따라 의회사무국 조직 및 분장사무를 개편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조례명 변경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로 한다.
 - 하부조직인 계(係)제 폐지
 -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
 - 소속위원회 사무처리시 ☞ 소속위원장 지휘
 - 소속위원회 사무외의 일반적 사무처리시 ☞ 사무국장 지휘감독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이준석)

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」 명칭을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」로 변경하고, 하부조직인 「계」제를 폐지하였으며,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구 본청 정원조례에 통합 운용하는 내용입니다. 이는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이 (대통령령 제 15,875호) '98. 8. 31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사무국설치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동 조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호	20
-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10. 19
발 의 자 : 박남오의원의외4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의 개정(대통령령 제15875)에 따라 의회사무국 조직 및 분장사무를 개편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조례명 변경 :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로 한다.

나. 하부조직인 계(係)제 폐지

다.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

- 소속위원회 사무처리시 : 소속위원장 지휘

- 소속위원회 사무외의 일반적 사무처리시 : 사무국장 지휘·감독

3. 관련법규

가.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 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

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국장)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(이하 “사무국장”이라 한다) 과 사무직원(이하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전문위원)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.

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